특 허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2허5843 등록취소(상)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성헌

피 고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D

변론종결 2023. 4. 11.

판 결 선 고 2023. 5. 11.

주 문

- 1. 특허심판원이 2022. 10. 12. 2021당277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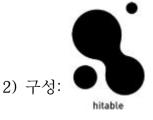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1) 원고는 2021. 9. 17.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21당2774호로 아래 나.항 기재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의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심판청구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 2) 특허심판원은 2022. 10. 12.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중 레스토랑 예약대행서비스업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하였으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등록결정일: 상표등록 제1317198호/ 2017. 3. 2./ 2017. 12. 29./ 2017. 11. 8.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43류의 공업용 조리장치 임대업, 레스토랑 예약대행서비스업, 레스토랑 예약업, 레스토랑 정보제공업, 식기 임대업, 식음료제공서비스업, 요

리기구 대여업, 음식조달서비스업, 의자 및 테이블 임대업, 주점업, 카페 및 레스토랑서비스업, 컴퓨터데이터베이스로부터 조리법 및 요리 분야 정보제공업, 숙박 예약대행업, 호텔예약대행업

4) 상표권자: 피고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자백간주 사실

-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아래 2)항과 같이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사실은 피고가 자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 2)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인 2021. 9. 17.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그 지정상품인 '레스토랑 예약대행서비스업'에 대하여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나.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그 상표권자인 피고 또는 그 전용사용권자나 통상사용권자에 의하여 지정상품에 사용되지 않았고,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에 대한 피고의 주장·증명도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다. 소결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그 상표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이와 결론이 다른 이 사건 심결은 취소되어야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이형근

판사 임경옥

판사 윤재필